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10. 8 선고 2023가단131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수영, 변호사 정은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웅

변 론 종 결 2024. 8. 27.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상남도 거제시 D건물, E호]과 피고 사이의 2022. 2. 4.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쟁점

가.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2023. 5. 17.을 기준으로 총 92,952,902원 상당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C의 부 F은 2022. 2. 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 자식인 H, C, 피고가 있었다.

3) 피고는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4. 협의 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2. 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상속받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 및 위 지분의 원상회복(C 명의로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 이미 망인으로부터 85,393,766원을 증여 받아 구체적 상속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제9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축탁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개시일인 2022. 2. 4.를 기준으로 한 망인의 상속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거제시 J 토지 및 주택, K 토지가 있었는데, 위 상속재산 가액은 287,523,300원인 사실(피고는 위 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선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채무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이 인정된다.

한편 을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5. 8. 망인으로부터 85,6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이를 L에 10,034,904원, 주식회사 M에 9,245,631원, N에 10,045,411원, 소외 O에게 28,327,590원, P에 2,026,000원, 주식회사 Q에 20,103,230원을, 2014. 5. 12. R에 5,160,000원 총 85,393,766원을 각 송금한 사실, 한편 C은 2013. 4. 17. 내지 2013. 12. 4.경까지 사이에 위 L로부터 20,000,000원, N로부터 10,000,000원, M로부터 10,000,000원(대체로 피고가 위 각 대부업체에 송금한 돈 상당에 해당한다), O으로부터 총 80,010,000원을 이체받은 사실, 한편 위 'R'는 주식회사 S 공조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공조회에서 C이 공조회 회비를 임의사용한 채무액을 피고가 대신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5. 8. 망인으로부터 85,600,000원을 송금받은 돈 중 L 등에 이체한 돈 85,393,766원은 모두 C의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85,393,766원은 망인이 생전에 C에게 증여한 돈으로 C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 C의 특별수익을 가산한 372,917,066원(287,523,300원+ 85,393,766원)에 C의 상속지분을 곱하여 산출된 C의 상속분은 82,870,459원인데, 결국 C은 자신의 위 상속분을 초과하는 돈을 특별수익으로 취득하였으므로 C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C이 이 사건 재산분할협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금진

별지